

표 창 규 정

(제정 1986. 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표창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표창은 본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본교의 표창은 백마상, 국화상, 근속상 등으로 구분한다.

1. 백마상은 탁월한 창의력으로 학교 운영에 유익한 창안을 하여 채택된 자에게 수여한다.
2. 국화상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3. 근속상은 본교에서 성실·근면하게 장기근속하는 동안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에게 수여하며,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계속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추천) 표창 후보자는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지원실장 또는 교무지원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표창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행한다.

제8조(부상)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근속상의 표창권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이중 표창금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표창) 이 규정에서 정한 표창 외에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 직원상 등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8]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2-18-2 표창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